



## 입시전형관리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3
제정일자	1991. 10. 01
개정일자	2015. 04. 07
개정번호	Ver. 6 총페이지 2

**제1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입시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칙은 신입생 모집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반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입시관련 업무수행에 목적을 둔다.

**제3조(구성)**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교학처장,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종합정보지원실장, 각 학부장을 위원으로 한다. 단,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과는 학과장을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7.>

**제4조(임기)**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과 같다.

**제5조(의결)** 본 위원회 의결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임무)**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입생모집 전형요강에 관한 사항
2. 신입생모집에 따른 학교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
3. 신입생모집 입학원서 배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
4. 입시상담에 관한 사항
5. 입시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6. 지원자면접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
7. 추가합격에 관한 사항
8. 기타 신입생모집 전형 및 시간제등록생 모집에 관한 전반적 사항

**제7조(시행)**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**제8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